

---

---

司法 문제를 통해서 본  
몽골 복속기 고려국왕 위상

- 다루가치 · 管軍官 체재기의 '雜問'을 중심으로 -

---

---

이 명 미  
(서울대학교)

---

머리말

I. 다루가치 · 管軍官의 체재와 사법권 행사 사례 및 양상

II. 고려국왕 · 다루가치 · 管軍官의 '雜問'과 국왕 위상

1. 雜問

2. 雜問 이후 보고\_국왕 親朝의 배경과 의미

맺음말

---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A2A01017529).

● 투고일: 2016. 2. 10.    ● 심사일: 2016. 2. 15.    ● 게재확정일: 2016. 3. 10.

www.kci.go.kr

## 요약

1269년 원종 복위 이후 다루가치와 몽골군이 고려에 주둔하게 되면서, 주로 軍事와 관련하여 다루가치와 管軍官이 사법권을 행사하는 사례들이 발생했다. 이러한 사법문제 처리과정에서 주목되는 지점은 다루가치와 관군관, 고려국왕 혹은 신료가 함께 사법문제를 처리하는 ‘雜問’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는 約會와 같은 몽골의 합의제적 재판방식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총체적 감독관으로서의 다루가치와 군사업무를 주로 하는 管軍官, 그리고 고려국왕(공주) 측이 함께 軍事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법처리가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상호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雜問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조정되지 않았을 때에는 雜問에 참여했던 주체들이 황제의 朝廷에 나아가 서로의 입장 차이를 조율해야 했다. 1278년 충렬왕의 親朝 역시 몽골의 국가체제 안에서 중요한 위상을 갖고 있었던, 직접적으로는 일본원정이라는 大業과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할 두 주체 사이의 갈등이 김방경 무고사건을 통해 外化한 가운데 더 이상의 분란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요구된 것이었다.

고려국왕은 몽골 측 관인과 함께 심문하고 그 결과를 직접 보고하기 위해 入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나아가 스스로의 정치적 처사와 관련해서 몽골 측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 그에 대한 변론을 위해 入朝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몽골 황제권은 그러한 분쟁을 수습하는 중재자 및 최종 결정권자로서 기능했으며, 이러한 상황은 몽골과의 관계 속에서 고려국왕의 사법적 권한 혹은 위상에 발생한 변화를 보여준다.

주제어: 다루가치, 管軍官, 約會, 雜問, 몽골 황제권, 국왕 親朝, 고려-몽골 관계

## 머리말

사법권은 사회와 성원에 대한 통제,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권력으로서 국왕권 혹은 최고권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몽골과의 관계 형성 이후 고려국왕이 그 권한을 專斷하지 못하고 몽골 황제가 고려에 대해 일정부분 사법권을 행사하게 된 상황은 이 시기 권력구조의 단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기존 연구들은 이를 몽골의 고려에 대한 정치적 간섭 및 압제의 중요한 한 가지 형태로서 다루어왔다. 그러나 이는 정치사, 관계사 연구 논문들을 통해 부분적으로 언급되었을 뿐, 사법문제를 專論으로 다룬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구체적인 연구 상황을 보자면, 우선 이 시기 고려의 사법문제를 專論으로 다룬 연구로 몽골 황제에 의해 고려 내 사법문제의 처리를 위해 파견되었던 사신들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했던 斷事官을 통해 이 문제에 접근한 연구가 있다.<sup>1)</sup> 이 연구는 몽골의 斷事官이 원래 사법을 관장하던 자르구치(札魯忽赤, jarguchi)를 前身으로 한다는 점에 주목해 그들이 황제를 대리해서 고려 내 사법문제를 처리한 사안들을 분석함으로써 고려국왕의 사법권이 제약받았음을 논하는 한편으로, 그러한 斷事官이라는 관직이 고려에 도입되어 설치된 高麗王府 斷事官이 刑政과 관련한 활동을 거의 보이지 않은 점을 들어 몽골이 직접 임명한 斷事官이 고려국왕의 권한(사법권)을 제약하거나 침해하지 못했음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몽골의 斷事官이 刑政을 담당하는 관직이라는 점에 착안한 의미있는 연구라

---

1) 안병우, 2008 「高麗王府 斷事官과 高麗-元 관계」, 『역대 중국의 관도 형성과 변강』, 한신대학교출판부; 2009 「원 단사관(斷事官)과 고려의 사법권」, 『문화로 보는 한국사』 5 -세계 속의 한국사-, 태학사.

고 생각된다. 다만, 몽골에서 斷事官은 그 주된 업무가 刑政이기는 했으나 이외에도 다양한 범주에 걸치는 역할을 수행했고, 이러한 양상은 쿠빌라이 집권 이후 제국의 체제가 정비되어가는 과정에서 더욱 확대되었다.<sup>2)</sup> 이러한 점은 고려에 온 몽골 斷事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위 연구결과에서도 보이듯 고려에 왔던 斷事官들은 刑政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斷事官의 활동양상만을 통해 이 시기 고려의 사법문제에 몽골황제권이 작용한 양상의 전모를 밝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고려의 사법문제를 처리했던 몽골관인은 斷事官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이 연구의 결과는 보완의 여지가 있다.

사법문제를 專論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征東行省의 문제를 통해 이 시기 고려의 사법권 문제를 다룬 연구도 있다. 여기에서는 일본원정 이후의 정동행성을 몽골의 고려에 대한 통제기관으로 보는 가운데, 몽골황제가 직접 임명한 몽골 출신 省官들이 고려 사법 문제에 개입하고 정동행성의 屬司 가운데 하나로 사법 기능을 담당했던 征東行省理問所가 몽골의 입장을 대변해 고려의 사법 문제에 개입했던 정황에 주목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몽골이 고려에 대한 통제, 지배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지배층 분열정책의 일환으로 해석했다.<sup>3)</sup> 이외에도 이 시기 몽골과의 관계를 통해 고려의 國體가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를 총체적으로 다루는 글에서 고려국왕의 사법권이 몽골 황제권에 의해 축소, 침해당했음이 원론적인 수준에서 언급되기도 했다.<sup>4)</sup>

- 
- 2) 몽골의 자르구치, 혹은 斷事官과 관련해서는 이은정, 1992, 「元朝成立期 자르구치(斷事官)의 役割變化와 그 性格」,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석사학위논문; 劉曉, 1996, 「元代大宗正府考述」 『內蒙古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96年 2期; 1998, 「元朝斷事官考」 『中國社會科學院研究生院學報』, 1998年 4期 등을 참조.
  - 3) 장동익, 1994 『高麗後期外交史研究』, 일조각. 이와는 달리, 14세기 전반 이후에는 정동행성이 고려 출신 성관들로 구성되어 사실상 고려기관화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한다. (이강한, 2008 「정치도감(整治都監) 운영의 제양상에 대한 재검토」 『역사와 현실』 67)
  - 4) 森平雅彦, 2008 「事元期 高麗における在來王朝體制の保全問題」 『北東アジア研究』,

이상과 같은 연구들을 통해 이 시기 고려의 사법문제에 대한 몽골의 개입 양상이 어느 정도 밝혀졌고, 이는 고려-몽골 관계 및 이 시기 고려의 정치상황을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준다. 그러나 이 시기 고려의 사법문제를 전체적으로 조망한 연구가 거의 없는 가운데, 특정 기관이나 사건과 관련해 단편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연구 상황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문제를 다루는 기존의 연구들이 몽골 황제권이 고려의 사법문제에 ‘개입’ 혹은 ‘간섭’했다는 사실 그 자체에 주로 주목함으로써 그러한 개입 혹은 간섭이 발생하게 된 이 시기 권력구조의 전체상에는 충분히 착목하고 있지 못한 점 또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 시기 고려국왕권의 존재양상을 살피기 위해서는 황제권의 ‘개입’이라는 사실 자체와 그 결과 혹은 대응으로서의 ‘약화’ 혹은 ‘방어’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황제의 사법권이 고려에서 작용하는 구체적인 양상과 그에 조응하여 변화한 국왕의 사법적 권한 및 위상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몽골 황제권이 고려 내 사법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한 양상과 그로 인한 국왕의 사법권 및 사법적 위상의 변화상은 다루가치가 체재했던 원종대 후반 이후 충렬왕대 초에 이르는 시기, 다루가치 철수 후 몽골 측 使臣들에 의해 사법문제가 처리되었던 시기, 그리고 征東行省理問所 및 행정관이 사법문제에 개입했던 시기의 세 시기로 크게 구분된다. 물론 각 시기 간에는 차이점만큼이나 공통적인 측면도 존재하지만, 황제권을 대리하는 주체의 성격 및 고려와의 관계 차이에 따른 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가운데 첫 번째 시기에 해당하는 다루가치 체재기 고려국왕의 사법권 및 사법적 위상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1장에서는 다루가치와 몽골군 管軍官이 고려에 체재하는 가운데,

---

別冊1.(2013 『モンゴル覇權下の高麗：帝國秩序と王國の対応』, 名古屋大學出版會에 제수록)

이들에 의한 사법권 행사가 주로 어떤 사안들에서 발생하고 있었는지 살펴보고, 특히 몽골 管軍官들이 이러한 문제에 개입했던 맥락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제2장에서는 이 시기 사법문제 처리과정에서 보이는 ‘雜問’이라는 방식을 통해 총체적 감독관인 다루가치의 사법적 권한과 管軍官인 몽골군 元帥들의 사법적 권한, 그리고 고려국왕의 사법권이 황제권 아래에서 조율되는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사법권 행사자로서의 고려국왕의 위상이 변화해가는 구체적 양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 1. 다루가치·管軍官의 체재와 사법권 행사 사례 및 양상

몽골과의 전쟁 과정 및 전쟁 종식 직후 몽골의 다루가치가 고려에 파견되기도 했지만, 이는 단기간에 그쳤다. 다루가치가 상시적으로 고려에 머무르면서 직무를 행한 것은 1269년(원종 10) 원종이 임연에 의해 폐위되었다가 몽골에 의해 복위하는 과정에서 다루가치가 파견된 이후였다. 이후 다루가치들이 임기를 다하고 교체되면서 고려에 체재한 기간은, 충렬왕 4년(1278)의 이른바 ‘친조외교’ 결과로 철수가 결정되기까지 약 10년에 이른다. 『高麗史』와 『高麗史節要』를 통해 확인되는 원종 복위 이후 고려에 두어졌던 正·副 다루가치들의 체재 및 교체상황은 다음과 같다.<sup>5)</sup>

---

5) 다루가치가 고려에서 사망하거나 임기를 마치고 귀국한 후 새로운 다루가치가 부임하기까지 몇 개월의 공백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正·副 다루가치 가운데 한 명은 고려에 체재하고 있었음을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려에 설치되었던 다루가치들에 대한 傳論으로는 池內宏, 「高麗に駐在した元の達魯花赤について」(1979, 『滿鮮史研究』 中世, 吉川弘文館 수록); 주채혁, 1974, 「高麗内地의 達魯花

【표 1】 正·副 다루가치들의 체재 및 교체상황

연월	正 다루가치	副 다루가치
원종 11년(1270) 5월	脫朶兒 부임	焦天翼 부임
원종 12년 10월	脫朶兒 卒	
원종 13년 4월	李益 부임	
원종 14년 9월		焦天翼 귀국
원종 14년 12월		周世昌 부임
충렬왕 즉위년(1274) 12월	李益 귀국, 黑的 부임	
충렬왕 원년 2월		周世昌 卒
충렬왕 원년 7월	黑的 귀국	
충렬왕 원년 12월	張國綱 부임(?)	石抹天衢 부임
충렬왕 4년 8월	張國綱 귀국	
충렬왕 4년 9월		石抹天衢 귀국

정복지의 정치와 경제, 군사 전반에 대한 감독관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다루가치는 몽골 제국의 성립단계와 안정단계를 거치면서 점차 管民官으로 그 성격이 변화하였다.<sup>6)</sup> 원종대 후반 고려에 파견되었던 다루가치의 경우는 몽골에서의 그것과 같은 管民官의 역할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총체적인 감독관으로서 경우에 따라 고려의 民政 관련 사안에 간여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다루가치가 체재했던 기간과 상당부분 겹쳐지는 기간 동안 삼별초의 난 진압 및 일본 招諭와 원정 준비를 위해 몽골군이 고려에 進駐했고, 일본 원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이들

赤 設置에 관한 小考」, 『清大史林』1; 김보광, 2015, 「고려-몽골 관계의 전개와 다루가치의 置廢過程」, 『역사와 담론』 76 등을 참조할 수 있다.

6) 元代 다루가치가 管民官으로 그 성격이 변화해가는 배경과 양상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할 수 있다. 愛宕松男, 1988, 「元代都市制度とその起源」, 『愛宕松男東洋史論集』 v.4-元朝史, 三一書房, 313~314쪽, 319쪽; Endicott-West, E. “Imperial Governance in Yuan Times”,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 46, No. 2 (Dec. 1986), Harvard-Yenching Institute; 趙阮, 2012, 「元 前期 達魯花赤의 제도화와 그 위상의 변화」, 『동아시아문화연구』 51; 2013, 「大元제국 다루가치체제와 지방통치—다루가치의 掌印權과 職任을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 125 외.

을 총괄하는 기구로서 東征(征東)都元帥府가 고려에 두어졌다. 이처럼 원 중대 후반에서 충렬왕대 초에 이르는 시기에는 총체적 감독관으로서 다루가치가 체재하는 가운데 일상적인 사법 문제에 다루가치의 영향력이 행사되기도 했고, 管軍官인 몽골군 元帥에 의해 軍事 처리의 일환으로 사법권이 행사되기도 했다.

많은 사례가 확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사례들은 필요한 경우 다루가치가 고려 내에서의 詞訟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게 해준다. 원종 12년(1271), 다루가치 脫朶兒는 柳璣을 유배 보냈다가 소환했는데, 이는 前年에 나장 木同이 양민을 노비라 하고 다루가치에게 판 이후, 류경과 俞千遇가 왕명 없이 그 노비를 양민으로 되돌린 사건과 관련된다. 당시 원종이 류경을 파면하고 유천우를 유배 보내자, 유천우의 母가 처벌의 불공평함을 다루가치에게 호소한 데 따른 것이다. 7) 충렬왕 3년(1277)에는 前軍器注簿 洪宗老가 아들 洪仁伯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다루가치에게 금이 산출되는 곳에 대한 정보를 거짓으로 알린 일이 있었다. 8) 홍인백의 죄명이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홍종로가 아들의 사면을 위해 다루가치를 접촉한 것은 그가 고려 내에서의 사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었을 것이다.

위 사례들은 요구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고려의 사법기관에 의해 처리된 사안에 대해서도 다루가치가 추가적인 사법처리를 행하는 것이 가능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제도적으로 정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다루가치가 고려 내의 모든 사법처리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관련해서 충렬왕 3년에 발생했던 慶昌宮主와 그 아들 王琮에 대한 무고사건이 주목된다. 이 사건은 원종의 부인인 경창궁주와 그 아들 왕종이 소경인 중 終同을 시켜 충렬왕

7) 『고려사절요』 권19, 원종 12년 정월.

8) 『고려사』 권28, 충렬왕 3년 12월.

을 저주하고 왕종이 공주와 결혼하여 왕이 될 것을 도모했다는 무고로, 김방경을 무고한 1차 익명서 사건과 위득유 등의 2차 무고사건 사이에 발생한 것이었다. 사건의 경과를 보자면, 사건 발생 후 충렬왕은 김방경 등에게 이들을 국문하게 하고, 왕도 친히 왕종을 불러 국문했다. 경창공주와 왕종이 죄를 시인하지 않는 가운데 재상들은 그 석방을 요청했고, 왕과 공주가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자 하니 류경이 이 사안을 황제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처리하기를 청했다. 결국 왕이 알아서 처리하라는 황제의 허락을 받은 후 경창공주를 폐서인하고 왕종과 종동을 유배 보낸 후, 그 재산을 적몰했다.<sup>9)</sup>

당시 류경이 이 사안의 처리를 황제에게 승인받을 것을 청한 것은 그가 그러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보다는 경창공주 등의 죄상이 분명하지 않은 가운데 가산을 적몰하려는 왕과 공주를 저지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그런데 그 의도가 어떠했든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이 사건이 처리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고려국왕이나 그를 만류했던 신료들이 다루가치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었으며, 다루가치 또한 이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이 사건 앞뒤로 발생했던 김방경 무고사건에서는 다루가치가 사법처리 과정을 주도했던 것과 대조되는 부분이다. 이 문제와의 연관선상에서 결국 황제가 이들에 대한 처리를 충렬왕에게 맡긴 배경 또한 더 궁구해볼 여지가 있지만,<sup>10)</sup> 일단 여기에서는 다루가치가 고려에서의 모든 사법문제에 대해 개입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만을 확인해두도록 하겠다.

9) 『고려사』 권28, 충렬왕 3년 7월 丙辰, 8월 丁卯, 9월 壬寅; 권91, 順安公 王琮傳.

10) 충렬왕이 황제에게 사안의 처리를 자신에게 맡겨줄 것을 요청하며 보낸 표문 가운데, 이 사안을 “집안 일”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과는 관련하여, (『고려사』 권28, 충렬왕 3년 8월 丁卯) 이 사안이 고려왕실 내부의 문제라는 점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데, 이에 대해서는 추후 자세한 고찰을 하고자 한다.

이러한 가운데, 다루가치나 몽골의 管軍官들이 고려 내 사법처리 과정에 간여한 정황이 구체적인 사례로서 보다 많이 확인되는 것은 軍事와 관련된 사례들이다. 『高麗史』·『高麗史節要』에서 확인되는 사례들을 정리해보면 아래 【표 2】와 같다.

개별 사례에 따라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하지만, 국왕의 사법권과 관련하여 【표 2】에 정리된 사례들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주목되는 점은 몽골 측 세력으로서 다루가치 뿐 아니라 몽골군 元帥들 역시 심문 등 사법처리 과정의 주체였다는 점, 그리고 다수의 사례에서 다루가치와 관군관, 그리고 고려국왕 혹은 신료가 사법처리 과정을 함께 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먼저, 몽골군 元帥의 사법문제 개입은 특히 가장 많은 사례가 이 시기 대표적 부원배인 洪茶丘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국왕권 침해의 대표적 사례로서 이야기되어 왔다. 洪茶丘는 원종 12년(1271) 정월에 일본 招諭와 관련해서 파견된 趙良弼을 호송해 와서 金州 등처에 주둔했으며, 같은 해 5월부터 행해진 삼별초 토벌에 참가했다. 이후 일본 정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원종 15년 監督造船官軍民總管에 임명되었고, 提點高麗農事와 東征副元帥로 연이어 임명되었다.<sup>11)</sup>

이 기간동안 그는 고려에 온 직후에 발생했던 官奴 崇謙과 功德의 반란을 처리하는 과정에 다루가치 脫朶兒 및 고려 신료들과 함께 참여했고(②),<sup>12)</sup> 다음해인 원종 13년에는 왜선이 金州에 이른 것을 보고하지 않고 돌려보낸 慶尙道 安撫使 曹子一을 심문하고 황제에게 보고하여 주살했으며(④),<sup>13)</sup> 충렬왕 즉위년(1274)에는 충청도의 초공과 수수들이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部夫使인 대장군 崔沔을 장형에 처하고 大府卿 朴

11) 『고려사절요』 권19, 원종 12년 正月; 『고려사』 권130, 洪茶丘傳.

12) 『고려사절요』 권19, 원종 12년 正月.

13) 『고려사』 권27, 원종 13년 추7월 甲子; 『고려사절요』 권19, 원종 13년 추7월.

【표 2】 軍事 관련 다루가치·관군관의 고려 내 사법문제 개입 사례

연대	사법권 행사주체	내용
① 원종 11년 (1270) 11월	몽골군 元帥 阿海 → 다루가치 脫朶兒	潘南人 洪贊 등이 元帥 阿海에게 김방경 등이 삼별초와 내통한다고 고발. 阿海가 다루가치 脫朶兒에게 보고하여 그를 소환해 홍찬과 대질하게 함. 홍찬이 무고였음을 자백하여 김방경을 석방.
② 원종 12년 정월	다루가치 脫朶兒+ 洪茶丘+ 고려 재주	官奴 崇謙과 功德이 다루가치와 고려 관인을 죽이고 삼별초에 항복하려 함. 왕이 장군 崔文本 등을 보내 국문하게 했다가 다루가치에게 도움을 요청. 승겸 등이 자백하므로 승겸 등 4명을 죽이고 나머지는 놓아줌.
③ 원종 12년 4월	다루가치 脫朶兒+ 고려 재상 (황제의 명령)	작량을 지키던 몽골군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킨 자들을 황제의 지시로 고려 재상들과 함께 국문. 唐城 사람 洪澤을 죽이고 그 일당인 洪均庇 등을 형장 처서 역리에 충당.
④ 원종 13년 추7월	洪茶丘	왜선이 金州에 이른 것을 보고하지 않고 돌려보낸 慶尙道 安撫使 曹子一에 대해 洪茶丘가 그를 심문하고 황제에게 보고하여 주살.
⑤ 원종 14년 3월 辛酉	다루가치 李益	서해도의 전함이 대부분 敗沒되었다는 이유로 按察使 禹天錫을 잡아 가둠.
⑥ 충렬왕 즉위년(1274) 8월	洪茶丘	충청도의 초공과 수수들이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部夫使인 대장군 崔沔을 장형에 처하고 大府卿 朴暉로 그를 대신하게 함.
⑦ 충렬왕 2년 윤3월	다루가치 石抹天衢	우정인 李仁挺이 100여 명과 함께 다루가치를 죽이려 한다는 익명서. 칼을 썬 뒤 가두었다가 무고이므로 석방.
⑧ 충렬왕 2년 12월	제국대장공주 다루가치 石抹天衢+ 고려재상	貞和宮主가 齊國大長公主를 저주했고, 齊安公 王淑과 金方慶 등 43명이 不軌를 도모했다는 내용의 익명서가 石抹天衢에게 투서됨. 제국대장공주가 정화공주 투옥, 다루가치는 왕숙, 김방경 등을 투옥하고 재상들을 불러 雜問.
⑨ 충렬왕 3년 12월	忻都+ 다루가치 石抹天衢+ 고려신료	김방경 무고사건. 韋得儒 등이 忻都에게 고발. 1차 심문.
⑩ 충렬왕 4년 정월	忻都+ 洪茶丘+ 국왕	김방경 무고사건. 洪茶丘가 심문에 개입. 황제가 국왕·공주가 함께 심문할 것을 명함. 2차 심문.

暉로 그를 대신하기도 했다(⑥).<sup>14)</sup> 그리고 충렬왕 4년 김방경 무고사건 당시에도 심문을 비롯한 일련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⑩).

洪茶丘가 고려 내 반란 사건 등에 대한 사법처리과정에 개입하여 보여주었던 행동들, 그리고 軍事를 잘 이행하지 못한 장수들에 대한 징계 차원의 조치를 취한 것은 두 가지 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 가지는 주지하다시피 그가 고려에 원한을 갖고 있었던 이 시기 대표적 부원배였다는 점이다. 그의 고려·고려국왕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곳곳에서 확인되는데, 이러한 점은 그가 참여한 사법처리 과정에서도 확인된다. 그는 官奴崇謙과 功德의 반란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을 고려와 엮어서 개경을 공격해 점령하기 위해 함께 심문했던 다루가치 脫朶兒에게 비밀히 의논했다고 하며,<sup>15)</sup> 조자일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도 이 문제를 고려가 일본과 서로 통교한다고 확대해서 보고하여 결국 그를 주살하라는 황제의 명을 받아들였다. 김방경 무고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군이 고려로 와서 심문에 참여하여 이미 심문과정이 일단락된 사건을 확대시킨 것 역시 고려에 대한 그의 원한과 관련된다.

洪茶丘의 개인적 원한이 사법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사실이지만, 洪茶丘가 사법문제에 개입하고 고려장수들을 징계했던 것은 그의 지위에 근거한 것이기도 했다. 충렬왕 즉위년, 洪茶丘가 충청도의 초공과 수수들이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과 관련해 고려신료인 部夫使에게 장형을 가하고 다른 인물로 교체했던 것은 그의 監督造船官軍民摠管, 東征副元帥로서의 지위에 근거한 지휘체계상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 각 지역에 部夫使를 파견해 工匠을 징집하게 한 것은 그가 監督造船官軍民摠管에 임명된 후 취한 조치였고, 이를 기한에 맞추어 잘 수행하지 못한 데 대한

14) 『고려사』 권27, 충렬왕 즉위년 8월 癸酉.

15) 당시 脫朶兒는 洪茶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이 사안을 공정하게 처리했다고 한다. 『고려사절요』 권19, 元宗 12年 正月; 『고려사』 권130, 洪茶丘傳.

징계였다. 경상도 안무사 조자일에 대한 심문과 처벌 역시 당시 洪茶丘가 金州 등처에 주둔하면서 일본 초유와 정벌을 주도하고 있었다는 점을 통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洪茶丘가 다루가치와 함께, 혹은 독자적으로 고려 내 반란사건 등에 대한 사법처리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지휘체계상의 문제인 동시에 몽골 내 管軍官의 역할과 관련되는 측면이 있다.

이 문제를 살피는 데에 몽골의 約會라는 재판제도 관련 규정이 참고가 된다. 일반적 의미로 ‘약속하여 모이다’라는 뜻을 갖는 ‘約會’는 몽골 제국을 구성하고 있던 각종 집단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해 그 집단의 長과 관할관청이 함께 재판 또는 조사를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제국을 구성하고 있던 다양한 정치·문화 단위들의 상이한 법체계가 충돌하는 분쟁의 상황에서 이를 조율하기 위한 몽골제국 특유의 재판제도라고 할 수 있다.<sup>16)</sup> 몽골, 색목, 각 종교집단 등과 함께 몽골군 역시 約會의 대상이 되는데, 몽골군은 몽골인이라는 종족적 지위와 군인이라는 신분이 결합된 특권을 누리고 있었다. 몽골군은 輕罪와 民事와 관련한 詞訟은 소속 奧魯, 즉 軍官區의 장관이 처리하고 형사상 重罪는 奧魯長官과 有司가 約會하여 처리하도록 했는데, 이는 輕罪나 민사상 소송만 約會하고 형사

16) 『元史』卷102, 刑法志1, 職制상에 관련된 규정이 있고, 『元典章』에는 約會의 실제 사례가 다수 실려 있다. 특히 刑部에는 「諸色戶計詞訟約會」, 「儒道僧官約會」, 「醫戶詞訟約會」, 「樂人詞訟約會」, 「投下詞訟約會」, 「畏吾兒等公事約會」, 「軍民詞訟約會」, 「都護府公事約會」, 「窩戶詞訟約會」(『元典章』 권53, 刑部 15, 約會) 등 約會의 대상이 되는 주체 및 사안별 사례가 모아져있어 約會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이외에도 約會 사례는 『元典章』 곳곳에서 산견된다. 約會와 관련한 연구 성과로는 有高巖, 1936, 「元代之司法制度-特に約會制について」, 『史潮』 6-1; 1940, 「元代之訴訟裁判制度の研究」, 『蒙古學報』1; 岩村忍, 1968 「判例法の實體」, 『モンゴル社會經濟史の研究』, 京都大學校人文科學研究所; 森田憲司, 1996 「約會の現場」, 『前近代中國の刑罰』(梅原郁 編,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등을 참조할 수 있다. 이외에 胡興東, 2007, 『元代民事法律制度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209쪽; 呂志興, 2011, 「元代“約會”審判制度與多民族國家的治理」, 『西南政法大學學報』 2011年 4期와 같은 중국학계의 연구성과도 참조된다.

상의 重罪는 有司가 처리하도록 했던 일반 몽골인들 및 色目 이하 여타 約會 대상자들의 경우와 차이를 보인다.<sup>17)</sup> 이러한 점은 “有司의 업무가 몽골군과 관련된 경우에는 반드시 管軍官과 더불어 約會하여 問한다.”라고 한 『元史』 刑法志의 규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sup>18)</sup> 즉, 몽골군이 관련된 사법문제에서 그들을 관할하는 管軍官의 역할은 몽골 내에서도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은 洪茶丘를 비롯한 몽골 軍官들이 고려 내에서 발생했던 軍事 관련 사법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위와 같은 양상의 한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管軍官들의 사법과정 참여가 고려에서도 제도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洪茶丘와 같이 개인적인 의지를 가진 管軍官이 자신이 관련되어 있던 삼별초 진압이나 일본 초유 및 원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반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개입하고자 했을 때, 이것은 위와 같은 몽골 내 管軍官의 역할과 위상을 배경으로 인정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위 표에 보이는 사례들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주목되는 또 하나의 양상은 다루가치가 그 사법처리 과정을 고려국왕 혹은 신료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다루가치가 독자적으로 사안을 처리하고 있는 사례도 없지는 않지만(⑤, ⑦) 다수의 사안에서 다루가치는 고려국왕이나 그 신료, 혹은 管軍官과 함께 심문 등의 사법처리 과정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점은 위에서 살펴본 몽골의 約會에서 보이는 합의제적 의사결정방식과도 관련이 되는 한편, 이 시기 고려에서의 사법처리 과정이 보여주는 특징적인 면모로서 사법문제에서의 국왕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관련해서는 장을 달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

17) 岩村忍, 1968, 위 논문.

18) 『元史』 卷102, 刑法志1, 職制上.

## II. 고려국왕 다루가치·管軍官의 ‘雜問’과 국왕 위상

### 1. 雜問

다루가치와 고려국왕 혹은 신료, 管軍官이 함께 사법처리 과정에 참여한 사례로서 김방경 무고사건(⑨, ⑩)의 처리과정이 가장 상세하게 확인되는데, 이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충렬왕 3년(1277) 12월**, 전 대장군 위득유, 중랑장 노진의, 김복대 등이 제안공 왕숙과 김방경 등이 반역을 도모하였음을 忻都에게 고발 → 忻都가 기병을 끌고 다루가치 石抹天衢와 함께 충렬왕에게 알리고 아들 吉歹를 보내어 황제에게 보고 → 충렬왕이 류경, 원부, 이분희, 한강, 이습에게 명해 忻都, 石抹天衢와 雜問하게 함. 무고임이 밝혀짐 → **충렬왕 4년 정월~2월**, 洪茶丘가 몽골 중서성에 청해 심문에 개입. 忻都의 보고를 받은 황제가 충렬왕과 공주에게 함께 심문하도록 함. 왕, 忻都, 洪茶丘가 함께 심문하여 김방경과 김흔을 유배 보내고 나머지는 석방 → 洪茶丘가 사람을 보내어 김방경에 대해 황제에게 무고하고, 충렬왕은 印侯를 보내어 김방경을 유배 보내었음을 보고 → **3월**, 황제가 洪茶丘를 소환하고 충렬왕에게 入朝하여 보고하게 함 → 위득유, 노진의가 고려의 答筵법회가 원을 저주하는 것이라고 洪茶丘에게 이야기하니, 흥차구가 다루가치 石抹天衢에게 알리고 사람을 보내 몽골 중서성에 보고. 충렬왕도 장군 노영을 보내어 대변하게 하니, 평장 哈伯이 국왕이 직접 와서 보고하라고 함 → **4월~7월**, 충렬왕의 친조. 김방경 등의 무혐의가 인정되고, 다루가치와 동정원수부의 철수 결정

동정원수부 원수 忻都에게 고발된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목되는 것은 충렬왕이 보낸 고려신료들과 忻都, 다루가치 石抹天衢가 관련

자들을 ‘雜問’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충렬왕 2년에 정화궁주에 대한 무고와 함께 발생했던 김방경 등에 대한 무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표현이 보이는데(⑧), 여기에서 ‘雜問’이라는 것은 ‘함께 심문한다’는 정도의 의미로 해석된다. 이러한 ‘雜問’ 용례는 김방경 무고사건과 관련한 사례 이외에 『高麗史』·『高麗史節要』에는 충혜왕 복위 후 발생한 조적의 난 이후 충혜왕과 측근들이 몽골로 압송된 가운데, 이들을 中書省·樞密院·御史臺·翰林院·宗正府으로 하여금 ‘雜問’하게 했다는 사례에서 확인된다.<sup>19)</sup> 동일한 내용을 전하는 다른 기사에는 中書省·樞密院·御史臺·宗正府·翰林院으로 하여금 충혜왕 등을 ‘雜訊’하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sup>20)</sup> 이외의 ‘雜訊’ 사례로는 우왕 14년(1388) 趙胖 등의 옥사에서 巡軍萬戶들과 臺諫·典法이 ‘雜訊’했다는 사례가 있다.<sup>21)</sup>

많은 사례는 아니지만,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보건대 ‘雜問’ 혹은 ‘雜訊’은 단지 여러 명의 관원이 함께 심문을 한다는 의미보다는, 해당 사안의 사법처리과정에 관련되는 복수의 기관이 함께 심문 등 과정에 참여한다는 의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조선시대에 많이 보이는 ‘雜治’와 유사한 것으로, 고려시대의 ‘雜治’ 사례는 우왕대 이후의 옥사 관련 기록에서 주로 나타난다.<sup>22)</sup> 조선시대 이후에 많이 보이는 제도적 ‘雜治’는 중죄

19) 『고려사』 권36, 충혜왕 후원년 정월 辛未. “元囚王于刑部, 又繫金仁浚·金倫·韓宗愈·洪彬·李蒙哥·李儼·盧英瑞·安千吉·孫守卿·尹元佑·南宮信于獄, 命中書省·樞密院·御史臺·翰林院·宗正府, 雜問之.”

20) 『고려사』 권108, 洪彬傳. “使中書省·樞密院·御史臺·宗正府·翰林院雜訊之.”

21) 『고려사절요』 권33, 우왕 14년 정월 丙子朔. “廉興邦勸禡下令購捕趙胖甚急, 鄧子喬獲胖, 繫巡軍. 時, 興邦爲巡軍上萬戶, 興邦及都萬戶王福海副萬戶都吉敷李光甫委官尹珍姜淮伯與臺諫典法雜訊.”

22) 예컨대 우왕대의 사례로, 우왕 초년의 양백연에 대한 처벌 과정에서 최영, 박보로 등의 관원과 臺省·典法이 ‘雜治’한 사례(『고려사』 권114, 楊伯淵傳. “禍命瑩·朴普老·李元紘·張夏·梁伯益·都興等, 與臺省·典法, 會巡軍雜治.”) 및 般若에 대한 옥사에서 臺諫과 巡衛府가 ‘雜治’한 사례가 확인되며(『고려사』 권133, 우왕 2년. “仁任下般若獄, 臺諫巡衛府雜治之.”), 창왕대의 사례로, 김저 옥사와 관련하여 순군이 대간과 ‘雜治’하였다는 기록(『고려사』 권 137, 창왕 원년. “佇·得厚, 夜詣太祖

인에 대한 심문 과정에 三省의 관원이 함께 참여한 것으로, 三省雜治, 三省交坐 등으로 칭해지기도 하는데, 심문에서 行刑에 이르는 사법과정의 각 단계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함께 사안을 처리하여 중대한 사안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도모한 것이었다.<sup>23)</sup> 고려시대에 이러한 ‘雜問’, ‘雜治’ 사례는 몽골과의 관계 이후에 주로 보이는데,<sup>24)</sup> 초기 사례인 김방경 무고사건 처리과정에서의 ‘雜問’에는 그 처리에 공정성을 기하고 빠른 해결을 도모한다는 일반적인 차원의 이해 뿐 아니라 해당 사안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진 기관 혹은 주체가 복수인 상황에서 그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반영한다는 차원의 이해가 더해진 ‘雜問’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단 당시 고려조정과 몽골이 함께 삼별초를 진압하고 있던 상황에서 발생한 반란사건들은(①, ②, ③) 삼별초의 난 자체가 고려국왕, 조정에 대해 반기를 든 것이었던 만큼 고려와 몽골 양측 모두에 관련되는 사안이었다. 더욱이 김방경 무고사건은 무고이기는 했지만 반란 주도세력에 고

---

邸, 爲門客所執, 得厚自刎死. 囚佇巡軍獄, 與臺諫雜治, 辭連前判書 趙方輿, 并下獄.”), 그리고 종실 永興君 王環의 신원 확인과 관련하여 그 처인 辛氏가 憲府에 소송을 제기한 결과, 헌부에서 문하부낭사, 전법사, 순군과 이를 ‘雜治’했다는 기록이 있다.(『고려사』 권91, 襄陽公 王恕傳 附 王環傳. “辛氏自京山府來見, 喜甚曰, ‘知夫莫若妻.’ 遂訟于憲府, 憲府與門下府郎舍·典法司·巡軍, 雜治, 聚宗室及天祥等對辨.”) 공양왕대 尹彝·李初의 옥사 당시에도 臺省과 刑曹로 하여금 ‘雜治’하게 했다고 한다.(『고려사』 권115, 李穡傳. “會宗衍逃, 遂下玄寶·仲和·補·夏·仁桂·有麟于巡軍, 大獄遽起, 令臺省刑曹, 雜治之.”)

- 23) 조선시대 ‘雜治’는 『大明律』에 규정된 十惡을 비롯해 綱常에 관계되는 죄인을 국문했던 것으로, 그 주체가 되는 三省, 즉 세 기관은 사헌부·사간원·형조, 혹은 의정부·대간(사헌부·사간원)·의금부, 혹은 의정부·사헌부·의금부 등 경우에 따라 달랐으며, ‘三省交鞫’, ‘三省訊鞫’, ‘三省推鞫’, ‘三省合席’ 등으로 칭해지기도 했다.(『한국고전용어사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24) 이외에 『고려사』 형법지에서 ‘雜治’ 용례가 확인된다.(『고려사』 권84, 형법지1, 公式, 職制, “判, 死不再生人命至重. 今外方重刑界員例不親問使外吏於多事中雜治之甚爲不可.”) 그러나 이 용례는 위의 사례들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제도적인 의미에서의 ‘雜治’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체계없이 혼잡스럽게 심문하는 것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채웅석, 2009, 『고려사 형법지 역주』, 신서원, 178~179쪽)

려 종실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고려국왕에 대한 역모일 수 있는 것이었다. 이에 이러한 사안들을 처리하는 과정에 고려 측과 몽골 측의 이해가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국왕 혹은 신료들, 직접적으로 관련한 軍事를 주도하고 있던 몽골 측 관군관-원수부, 그리고 감독관인 다루가치의 ‘雜問’이 이루어졌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앞서 살펴본 사례로서 원종 13년(1272), 조자일에 대한 사법처리과정을 洪茶丘가 단독으로 진행하고 원종은 단지 그에게 조자일의 석방을 요구할 뿐 그 과정에 참여하지는 않았던 것은<sup>25)</sup> 실제 洪茶丘가 그러한 방면으로 황제에게 보고하기도 했지만, 이 사안이 고려에 대한 반역 혹은 잘못이기보다는 ‘고려의’ 잘못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고려에서의 다루가치와 管軍官, 그리고 몽골공주(고려왕실) 간의 관계이다. 앞서 몽골에서 管軍官이 갖는 사법적 권한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지만, 이에 더하여 이들은 같은 몽골 세력이면서도 전체적 감독관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던 다루가치와는 이해관계를 조금씩 달리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보도록 하겠다.

원종 12년(1271) 2월, 窄梁을 방수하던 몽골군들이 大部島에 들어가 주민을 약탈하자, 민들이 몽골 군사들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하여, 水州副使 安悅이 이를 평정한 사건이 있었다. 얼마 후, 다루가치 脫朶兒는 몽골황제의 지시를 받고 고려재상들과 함께 당성사람 홍택을 죽이고 그 일당 홍균비 등을 처벌했는데<sup>(3)</sup> 같은 달, 脫朶兒가 원종에게 “남쪽에 주둔하고 있는 우리 군사가 각 州郡을 약탈하여 백성이 살 수 없으니 마땅히 여러 道에 安撫使를 보내십시오.”라고 했음이 유의된다.<sup>26)</sup>

25)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원종은 張曄를 보내어 조자일을 석방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고려사』 권130, 洪茶丘傳)

26) 원종은 이를 받아들여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에 각기 안무사를 파견했다.(『고려사

즉, 당시 脫染兒는 반란을 일으킨 민들을 치죄하는 동시에 그 원인이 몽골군사의 약탈에 있었다는 점도 주지하고 있었고, 이에 추가적인 반란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혹은 그러한 민의 피해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안무사를 파견할 것을 원종에게 건의한 것이다. 당시 남쪽에 주둔하고 있던 몽골 군사는 직전인 원종 12년 정월에 일본 초유와 관련해서 파견된 趙良弼을 호송하고 金州 등처에 주둔하고 있던 洪茶丘 등의 군대였던 것으로 보인다.<sup>27)</sup> 같은 해 7월~9월 사이에는 삼별초를 토벌하고 난 후 몽골군에 포로된 민들 가운데 삼별초의 위협에 의해 억지로 그들을 따랐을 뿐 실제 삼별초에 호응하지는 않았던 자들은 원래대로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고려 측과 이를 거부하는 元帥 忻都 간에 갈등이 있었다. 당시 고려 측에서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수차례 몽골 황제 및 중서성에 글을 보내어 역적의 가족과 노비 이외에는 원래대로 살게 해 줄 것을 허락한다는 중서성 공문을 받았는데, 이를 가지고 忻都에게 민의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루가치 脫染兒는 고려 재상들과 함께 황제의 명령임을 들어 忻都를 압박했다.<sup>28)</sup>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다루가치와 관군관은 물론 같은 몽골세력으로서 삼별초 진압과 일본 초유 혹은 정벌이라는 황제의 명령을 함께 수행하고 있었지만, 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관군관들의 활동이 ‘軍事’ 자체에 집중되어 있었던 반면, 다루가치들은 군사적 업무와 관련해서 뿐 아니라 고려민의 안정이라는 문제까지도 포괄하는 총체적인 감독관으로서 그 입장을 달리 하고 있는 측면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다루가치의 감독관으로서의 역할에는 고려의 민생을 침해하던 몽골군에 대한 감독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고려왕실, 나아가 고려왕비인 몽골공주

절요』 권19, 원종 12年 2月)  
 27) 『고려사절요』 권19, 원종 12년 正月; 『고려사』 권130, 洪茶丘傳.  
 28) 『고려사』 권27, 원종 12년 5월 庚寅; 8월; 9월 庚午.

의 민생 침해에 대한 감독도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관련하여, 충렬왕 4년(1278) 4월의 일화가 주목된다. 당시 嘉林縣 사람이 다루가치에게 “현의 촌락이 元成殿, 貞和院, 將軍房, 忽赤, 巡軍에 나누어 소속되어 다만 金所 한 촌락뿐인데, 지금 鷹坊 미라리가 (촌락을) 또 빼앗아 소유하니” 부역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다루가치는 그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닐 것이니 각 道를 순행하며 조사하여 폐단을 없애겠다고 하고 왕에게 관원을 임용해 함께 가기를 청했고, 摠郎 金暉이 推考使로 임명되었다. 제국대장공주의 원성전을 비롯하여 왕실에 소속된 民戶의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재추들은 다루가치가 각 道의 실정을 파악하여 황제에게 보고한다면 이는 작은 일이 아닐 것이니 관가에서 물수한 백성을 돌려보내어 원래의 부역을 감당하게 할 것을 청했고 왕도 그렇게 하려 했으나, 공주의 반대로 중지되었다고 한다.<sup>29)</sup>

다루가치는 몽골황제의 관리였고 제국대장공주는 황제의 딸이었기에, 이 양자의 관계는 물론 공주가 우위에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위 사례를 볼 때, 업무적인 면에서 다루가치는 공주보다는 황제권과 직결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충렬왕 원년(1275)에 다루가치 黑的이 몽골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제국대장공주가 그가 “귀국하여 거짓으로 일을 꾸며낼까 두려워” 자신의 私屬人인 式篤兒를 함께 보내어 그의 행위를 엿보게 했던 것은, 기록과 같이 단지 그의 거만한 행동과 신뢰하기 어려운 성품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라기보다는 위와 같은 다루가치의 역할이 공주의 이해관계와 상충되었던 점과도 관련된 것이 아닌가 한다.<sup>30)</sup> 이때 귀국한

29) 『고려사절요』 권20, 충렬왕 4년 4월; 『고려사』 권89, 齊國大長公主傳, 충렬왕 4년.

30) 그의 귀국 기사에는 그가 “성질이 간사하여 믿기 어려웠다. 다루가치가 되어서는 매우 거만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고려사절요』 권19, 충렬왕 원년 추7월)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黑的은 원종이 복위할 당시 복위조서를 갖고 詔使로 고려에 왔던 인물로, 당시 원종과 서로 上座를 양보하기도 했다.(『고려사』 권26, 원종 10년 11월 癸亥) 여기에는 임연에 의해 폐립되었던 원종을 복위시키는 과정에서의 정치

黑的은 고려왕실의 동성혼 문제를 포함하여 몇 가지 사안을 보고했는데, 이 내용들은 단지 ‘참소’라기보다는 몽골의 입장에서 실제 고려와 몽골의 관계에서 이행되어야 할 문제이거나 고려의 정치적 상황이 갖고 있던 문제를 지적한 것이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sup>31)</sup>

요컨대, 원종이 복위한 후 고려에 들어온 다루가치와 몽골군, 그리고 고려국왕은 삼별초 진압이나 일본 초유 및 원정이라는 구체적 업무와 관련하여, 그리고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수반되는 여러 상황들에 대해 일면 이해관계를 공유하면서도 차이를 보였고, 그러한 업무와 관련해 사법처리가 필요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雜問’이라는 방식을 통해 상호 이해관계를 조정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雜問은, 물론 동일한 것은 아니겠지만 앞서 살펴본 몽골에서의 約會가 보여주는 합의제적 재판방식과도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32)</sup>

## 2. 雜問 이후 보고\_국왕 親朝의 배경과 의미

김방경 무고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주목되는 또다른 한 가지는

---

적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그의 행동을 통해 볼 때, 그에 대한 공주 등의 불신을 단지 그의 성격 문제만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몽골제국의 국가체제에서, 공주들은 諸王·駙馬·后妃 등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所領 혹은 屬民을 投下, 즉 位下로 가진 한 분권세력이었다. 몽골의 諸王·駙馬·后妃·公主 등은 몽골제국을 구성하는 중요한 주체들이었으나 그 분권적 성격으로 인해 집권적인 방향성을 갖는 대칸(이 과견한 관리)과 길항하기도 했다. 몽골제국의 국가체제와 投下에 대해서는 李治安, 1989 『元代分封制度研究』, 天津古籍出版社 참조.

31) 『고려사』 권28, 충렬왕 원년 7월 甲午; 10月 庚戌.

32) 約會 뿐 아니라, 위에서도 언급된 五府官의 공동심문이나 지방단위 재판과정에서의 圓坐·圓署제도 등 역시 몽골의 사법과정이 보여주는 특징적인 면모로서 언급되고 있다. 관련해서는 각주16)의 참고문헌들 및 趙文坦·孫成狀, 1995, 「元代司法制度的特点」 『東岳論叢』 1995年 3期; 劉長江, 2005, 「元代法政体制述論」 『重慶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5年 3期 참조.

‘雜問’ 이후의 과정이다. 아래에서는 ‘雜問’의 결과를 황제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국왕의 위상, 혹은 황제권이 작동하는 방식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고려에서의 雜問 결과를 포함한 여러 사안은 몽골 조정에 보고되었다. 이 과정은 기본적으로는 다루가치를 통해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되는데,<sup>33)</sup> 고려 측이나 원수부 측에서도 심문 결과의 보고 외에 특별히 요청할 사안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직접 보고하기도 했음을 사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위에 정리한 김방경 무고사건의 경과에서는 2차 심문 이후 洪茶丘와 충렬왕이 각기 몽골에 사신을 보내어 심문의 결과를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며,<sup>34)</sup> 심문 이전 고발을 접수한 忻都가 바로 아들을 보내 황제에게 보고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위 【표2】에 정리된 사례들 가운데에서는 관노 송겸과 공덕의 반란 사건(②)을 처리한 후 고려에서 상장군 鄭子璵를 사신으로 보내어 보고한 기록<sup>35)</sup>과 딱히 심문 결과의 보고라고 하기는 어려우나 충렬왕 2년(1276)에 발생한 정화공주 저주 및 김방경 반역과 관련한 무고 사건(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충렬왕이 사신을 보내어 이 사건이 익명에서 비롯된 것으로 근거 없는 것임을 들어 불문

33) 다루가치가 몽골과 고려 간의 명령 전달과 보고 과정에서 일차적인 역할을 했을 것임은 위에 제시한 ③의 사례, 그리고 충렬왕 4년 충렬왕의 入朝에 수행했던 고려의 신료들이 忻都 등 원수부 측이 제기한 고려에서의 여러 문제에 대해 몽골 중서성에서 변론하는 과정에서 박항이 “<원> 조정에서 고려에 명령하는 것은 모두 원수부와 다루가치에게 내려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여 굳이 ‘다루가치’를 함께 언급한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려사절요』 권20, 충렬왕 4년 추7월) 다만 이러한 다루가치와 몽골 간의 연락 상황은 고려 측이 개입된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한 보고가 또다른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일일이 사료에 기록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4) 당시 충렬왕은 제국대장공주의 私屬人 출신인 印侯를 사신으로 보냈는데, 洪茶丘가 사람을 보낸 사실은 印侯가 귀국 후 황제가 그를 통해 김방경이 무고함을 알고 洪茶丘를 소환하였음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확인된다.(『고려사절요』 권20, 충렬왕 4년 2월, 3월)

35) 『고려사』 권27, 원종 12년 2월 己亥.

에 붙이기를 청한 사례가 확인된다.<sup>36)</sup> 雜問의 사례는 아니지만, 金州에 이른 왜선을 돌려보낸 慶尙道 安撫使 曹子一을 심문하고 처벌하는 과정에서도(④), 洪茶丘는 심문의 결과를 황제에게 보고한 후 명령을 받아 주살했다.<sup>37)</sup>

이렇게 보고가 이루어진 가운데, 죄상의 유무가 명백하고 雜問에 참여한 주체들 간에 심문 과정이나 처결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으며 그러한 처결이 황제의 입장에서도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리과정과 결과를 보고하고 그에 대해 확인받거나 처벌 방침을 지시받는 것으로 사법 절차는 끝맺음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과정이 진행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것이 김방경 등에 대한 2차 심문과 그에 대한 洪茶丘와 충렬왕 측 각각의 보고가 있을 후, 황제가 양자를 소환한 점이다. 2차 심문의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몽골에 갔던 印侯의 귀국 보고에 따르면, 당시 황제 쿠빌라이는 김방경에 대한 韋得儒 등의 고발이 무고임을 어느 정도 확인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쿠빌라이는 洪茶丘를 소환하여 고려에서의 사법처리과정을 중지하게 했는데, 이와 함께 충렬왕 역시 ‘入朝하여 보고할 것’을 명했다.<sup>38)</sup> 충렬왕이 입조 여부를 머뭇거리는 사이 다시 담선법회와 관련한 위득유와 盧進義의 무고가 발생했고, 충렬왕은 즉시 張舜龍 등을 보내어 입조를 요청하고 출발했다. 도중에 장순룡 등을 통해 전해진 황제의 명령으로 김방경 부자와 위득유, 노진의 등도 함께 입조했으나, 노진은 도중에 사망하고 위득유 또한 몽골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다.<sup>39)</sup>

이 親朝의 결과로 고려에 체재하던 다루가치와 몽골군·원수부의 철수

36) 『고려사』 권28, 충렬왕 2년 12월 甲申.

37) 『고려사절요』 권19, 원종 13년 7월.

38) 『고려사』 권28, 충렬왕 4년 3월 甲午; 『고려사절요』 권20, 충렬왕 4년 3월.

39) 『고려사절요』 권20, 충렬왕 4년 4월.

가 결정되었고, 이러한 점은 고려-몽골 관계에 매우 중요한 획기를 이루었다.<sup>40)</sup> 그런데 이러한 결과적인 측면에 더하여 이때 황제가 고려국왕의 入朝를 요구한 맥락이 유의된다. 동아시아의 국가 간 관계에서 제후국의 왕이 천자국-중국의 황제를 직접 만나 朝覲하는 것은 실제 그것이 실현된 경우는 거의 없다 하더라도 책봉과 조공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관계의 예법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몽골과의 관계에서 ‘朝覲’은 복속을 표하는, 혹은 정치단위의 수장들 간에 직접 面對를 통해 개인 간 관계를 맺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의미를 더하고 있었다.<sup>41)</sup> 그런데, 충렬왕 4년(1278)에 몽골황제가 고려국왕에게 入朝를 요구한 것과 이후 상황은 물론 위와 같은 의미와 맥락도 갖고 있었지만, 반역사건과 관련한 問事 이후, 황제의 명으로 그 問事に 참여했던 충렬왕으로 하여금 단지 使臣이 전달하는 表文을 통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황제의 조정에 들어와서 보고를 하도록 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실제 충렬왕은 몽골에 간 이후 연회 등에 참석하기도 했지만 중서성에 글을 보내 위득유 등이 무고하였음을 변론했다.<sup>42)</sup> 당시 世祖 쿠빌라이는 사안을 마무리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던 노진익의 위득유가 모두 사망하여 訟事を 진행할 수 없다고 했는데,<sup>43)</sup> 이를 통해서도 당시 쿠빌라이가 충렬왕을 入朝하게 하고 김방경 등을 함께 소환한 것은 김방경 무고사건과 관련한 訟事を 몽골 조정에서 마무리짓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쿠빌라이가 충렬왕이 印侯를 통해 보고했던 심문의 결과를 신뢰

40) 이익주, 1996 『高麗·元 관계의 構造와 高麗後期 政治體制』,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59~65쪽

41) 몽골에서 朝覲은 諸王封君이 카안에게 臣服하는 상징이었으며, 이를 통해 述職이나 王爵의 昇黜도 이루어져 諸王封君의 지위, 권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몽골에서의 朝覲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李治安, 1989 『元代分封制度研究』, 天津古籍出版社, 297~299쪽을 참조.

42) 『고려사』 권28, 충렬왕 4년 6월 戊寅.

43) 『고려사』 권28, 충렬왕 4년 추7월 戊戌.

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몽골의 국가체제 안에서 중요한 위상을 갖고 있었던, 보다 직접적으로는 일본원정이라는 大業을 앞두고 있었던 당시 상황에서 이와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할 두 주체 사이의 갈등이 김방경 무고사건을 통해 外化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분란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sup>44)</sup>

이러한 국왕의 親朝는 入朝의 명령을 받은 후 충렬왕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단지 “朝覲은 諸侯가 天子를 받드는 의식이요, 歸寧은 여자가 어버이를 섬기는 예절”<sup>45)</sup>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도 없으며, 몽골적 의미에서 정치단위 수장 개인 간 관계의 유지와 강화를 위한 기제로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다. 일차적으로는 김방경 무고사건의 처리과정을 보고하고 異見을 조정받기 위해서,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 사건을 통해 外化한 삼별초 토벌 이후 포로 처리문제 및 일본 원정 준비 문제를 둘러싼 몽골 원수부 측과 고려 측의 입장 차이를 역시 황제의 조정에서 조정받기 위해 入朝를 명령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충렬왕이 入朝의 명령을 받은 후 術家의 말을 구실로 入朝를 머뭇거리고, 굳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이때의 入朝 명령이 갖는 위와 같은 의미 때문이었을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다루가치·관군관 체제기의 사례에서는 김방경 무고사건에서만 확인되는 바이지만, 유사한 양상은 다루가치 등이 철수한 이후의 사법문제 처리과정에서도 나타난다. 그러한 사례들 가운데 충렬왕

44) 이때의 親朝 결과로 고려에 주둔하던 몽골군의 철수가 결정되었지만, 이는 영구적으로 일본원정 등과 관련한 몽골군을 고려에 주둔시키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얼마 지나지 않은 충렬왕 6년(1280) 8월, 몽골에서는 일본 원정을 위해 고려에 정동행성을 두었다. 충렬왕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결과적으로는 충렬왕이 그 행성의 승상이 되어 일본원정 준비를 주도하게 되었지만, 애초에 몽골 측에서 구성했던 정동행성 지휘부는 東征元帥府의 元帥와 副元帥로서 고려에서 갈등을 빚었던 忻都와 洪茶丘였다.(『元史』 卷11, 世祖 至元 17年 8月 戊戌; 『고려사』 권29, 충렬왕 6년 9월 丙辰)

45) 『고려사』 권28, 충렬왕 4년 3월 己亥.

4년의 친조와도 직결되는 동왕 5년의 入朝 사례가 주목된다.<sup>46)</sup>

충렬왕 4년 12월, 몽골에서는 斷事官 速魯哥를 사신으로 보내어 충렬왕이 이분희 형제를 죽이고 지득룡 등을 유배 보낸 일 및 몽골 종전군과 진수군의 처를 쇠환한 일에 대해 問事했다.<sup>47)</sup> 이는 洪茶丘가 몽골에서 호소한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速魯哥의 問事が 있자, 고려신료들은 충렬왕에게 직접 몽골에 入朝할 것을 청했고, 충렬왕은 이를 받아들여 같은 달에 입조했으며,<sup>48)</sup> 速魯哥는 귀국하면서 이 사안과 관련되어 있었던 김방경과 허공을 데리고 갔다.<sup>49)</sup>

충렬왕은 몽골에 이른 후 세 차례 황제를 만난 것으로 보이는데, 연회를 제외한 두 차례 만남에서 쿠빌라이는 충렬왕에게 洪茶丘가 제기한 두 가지 문제에 대해 물어보았다. 洪茶丘도 함께 했던 이 자리에서, 충렬왕은 먼저 이분희 형제를 죽인 것은 그들의 죄악이 쌓였기 때문에 ‘聖旨’를 받들어 낸 것이라고 했다. 이 ‘聖旨’는 앞서 김방경 사건과 관련해 入朝했을 때 황제를 面對하여 김방경 무고사건을 해결하는 한편으로, 향후 다시 이와 같이 不法을 행하는 자가 생긴다면 왕이 스스로 다스리게 해 줄 것을 요청하였을 당시, 이를 허락한 황제의 ‘聖旨’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sup>50)</sup> 한편, 충렬왕은 종전군의 처를 억류했다는 사안에 대해서는 혼인관계 확인을 위해 婚書의 유무를 확인하여 혼서가 있는 경우만 데리고 가게 한 것일 뿐 억류한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충렬왕 4년 친조 당시 몽골군이 철수하면서 데리고 갈 고려민의 범위를 정하는 가운데, 쿠빌라이는 이미 결혼한 처는 함께 보내고 이외에 군사들이 妻家

46) 충렬왕이 入朝를 위해 출발한 것은 동왕 4년 12월이었으나, 황제를 만난 것은 동왕 5년 정월이었다. 『고려사』 권28, 충렬왕 4년 12월 辛卯; 권29, 충렬왕 5년 정월 丙寅

47) 『고려사』 권28, 충렬왕 4년 12월 癸未.

48) 『고려사』 권28, 충렬왕 4년 12월 甲申, 辛卯.

49) 『고려사』 권28, 충렬왕 4년 12월.

50) 『고려사』 권28, 충렬왕 4년 추7월 甲申.

인원이라 속이고 데리고 가려했던 자들은 돌려보내지 말도록 한 바 있었다. 이에 충렬왕은 곧 이 문제를 분간하기 위해 김주정과 장순룡을 서해도에, 조인규와 印侯를 경상도에, 김천고를 전라도에 보내어 철수하는 몽골군으로 하여금 ‘부모가 허락하여 출가한 부인’만을 데리고 가게 했다.<sup>51)</sup> 위 충렬왕의 언급은 곧 이때 파견된 관원들이 ‘부모가 허락하여 출가한 부인’을 분간하기 위해 혼인문서의 유무를 조사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sup>52)</sup>

앞선 충렬왕 4년의 入朝와 마찬가지로 이때의 入朝 역시 국가 간의 외교의례 혹은 관계유지와 강화의 기제로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차이점은 앞서의 入朝가 雜問의 주체로서 그 결과를 보고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때의 入朝는 충렬왕 자신의 정치적 처사에 대한 洪茶丘의 문제 제기에 변론하기 위해 入朝했던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사신 速魯哥의 問事가 있었을 당시 왕에게 入朝를 요청했던 고려신료들 역시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다. 이 과정은 물론 사법적인 절차로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국왕이 자신의 정치적 처사에 대해 상위의 권위 앞에서 변론하고 그 當否에 대한 처분을 따라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 시기 국왕 위상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한 가지 유의되는 점은 이러한 충렬왕의 변론은 딱히 틀린 것이라 하기는 어려우나 사실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洪茶丘의 문제 제기 또한 사적인 의도가 개입된 것이기는 하지만 부당한 것이라고 하기만은 어렵다는 점이다. 충렬왕이 이분회 형제를 죽인 것은 적절한 법적 절차에 따른 주살은 아니었다. 親朝를 통해 다루가치 및 몽골군의 철수라는 성과를 얻어낸 후 국내 정치세력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洪茶丘 세력으로 판단한 이들을 일단 유배를 보낸 후, 이 사안이 洪茶丘에 의

51) 『고려사절요』, 권20, 충렬왕 4년 8월.

52) 『고려사절요』, 권20, 충렬왕 5년 춘정월.

해 다시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 유배 도중에 죽인 것이었다. 종전군 처자 문제 역시 혼인 여부 확인을 위해 혼서를 확인했다는 것은 타당한 절차인 것으로 보이지만, 당시 종전군·진수군과의 혼인사례 가운데 혼서를 지참한 사례가 일반적인 것이었는지 의심스러우며 사실상 그 처들을 몽골로 보내지 않기 위한 조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목되는 것은 이 사안을 처리한 황제의 중재자로서의 입장이다. 洪茶丘의 문제 제기과 충렬왕의 변론을 모두 들은 쿠빌라이는 “군인의 처로 자녀가 있는 자는 남편을 따라 보내게 하고, 고려의 高官으로 죄를 지은 자는 보고한 후에 죄를 주도록 하라”고 한 후 왕에게 귀국할 것을 명했다.<sup>53)</sup> 즉, 洪茶丘의 요구사항을 모두 들어준 것은 아니었으나, 충렬왕의 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 또한 고려한 결정이었다. 그리고 사법권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결정을 통해, 앞서 고려에서 불법을 행한 자들을 국왕이 스스로 처결하도록 한 것에는 제한이 있는 것임이 분명해졌다.<sup>54)</sup>

요컨대, 고려국왕은 몽골과 직접 관련된 사안에 대해 몽골 측 관인과 함께 심문하고 그 결과를 직접 보고하기 위해 入朝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고려 내정 문제에 대한 스스로의 처사와 관련해서도 몽골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 그에 대한 변론을 위해 入朝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다. 그리고 황제권은 그러한 분쟁의 과정을 수습하는 중재자 및 최종 결정권자로서 기능하였다.

---

53) 『고려사』 권29, 충렬왕 5년 정월 戊辰.

54) 유사한 맥락의 명령이 1298년 충선왕 폐위를 계기로 다시 한번 내려진다. 충선왕이 폐위된 데에는 물론 趙妃 무고사건이나 관계개편의 문제가 주요했으나 千戶 金呂를 擅殺한 것 또한 폐위사유의 한 가지였고, (『元史』 卷208, 高麗傳) 관련하여 충렬왕이 복위한 후 몽골에서 보내 온 조서에는 “命官이 죄가 있을 때에는 모름지기 일의 전말을 갖추어 보고하고, 마음대로 죽이지 말라”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고려사』 권31, 충렬왕 25년 4월 辛亥) 그리고 이후 공민왕대 이전까지는 황제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고려국왕이 관리를 주살한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

## 맺음말

이상 원종대 후반에서 충렬왕대 초반에 이르는 시기, 몽골 다루가치와 管軍官이 고려에 체재하는 가운데 발생했던 司法 관련 사안의 처리과정을 통해서 고려국왕의 권한 및 위상이 변화한 구체적 양상을 살펴보았다. 살펴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이 시기 고려국왕권의 단면을 이야기해보는 것으로 글을 맺도록 하겠다.

1269년 원종 복위 이후, 다루가치가 고려에 체재하게 되고 삼별초 난 진압 및 일본 招諭와 원정 준비를 위해 몽골군이 고려에 進駐하게 되면서, 주로 軍事와 관련하여 다루가치와 管軍官이 사법권을 행사하는 사례들이 발생했다. 이 시기 사법문제 처리과정에서 주목되는 지점은 다루가치와 관군관, 고려국왕/신료의 함께 사법문제를 처리하는 ‘雜問’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다루가치와 관군관은 모두 몽골세력으로 삼별초 진압과 일본 초유 혹은 정벌이라는 황제의 명령을 함께 수행했다. 그러나 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관군관들의 활동이 ‘軍事’에 집중되어 있었던 반면, 다루가치들의 역할은 管民까지도 포괄함으로써 구체적 사안에 대한 대응에서 차이를 보였다. 삼별초 난은 고려국왕에 대한 반란이기도 했으므로 고려 역시 이를 진압하는 데에 적극적이었지만, 일본 초유 및 원정에 대해서는 다루가치나 관군관과는 다른 입장에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동업무인 軍事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법처리가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이들은 ‘雜問’이라는 방식을 통해 상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반영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雜問 과정에서 상호 이해관계가 조정되지 않았을 때에는 雜問에 참여했던 주체들이 황제의 朝廷에 직접 나아가 서로의 입장

차이를 조율해야 했다. 1278년 충렬왕의 親朝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이는 몽골의 국가체제 안에서 중요한 위상을 갖고 있었던, 보다 직접적으로는 일본원정이라는 大業과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할 두 주체 사이의 갈등이 김방경 무고사건을 통해 外化한 가운데 더 이상의 분란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요구된 것이었다.

몽골과의 관계 속에서 고려국왕은 몽골 측 관인과 함께 심문하고 그 결과를 직접 보고하기 위해서, 나아가 스스로의 정치적 처사와 관련해 몽골 측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 그에 대한 변론을 위해서 직접 몽골 조정에 入朝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몽골 황제권은 그러한 분쟁을 수습하는 중재자 및 최종 결정권자로서 기능했다. 이러한 상황은 몽골과의 관계 속에서 고려국왕의 사법적 권한 혹은 위상에 발생한 변화를 보여준다.

다루가치와 몽골군이 철수한 이후 고려 내에서의 사법문제는 국왕이 專斷했다. 그러나 그러한 국왕의 사법권은 기본적으로는 “高官으로 죄를 지은 자는 보고한 후에 죄를 주도록 하라”고 한 충렬왕 5년 쿠빌라이의 聖旨에 의해 제한되었으며, 필요한 경우 몽골황제는 使臣을 통해 사법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또 충숙왕대 이후로는 고려 내 사법문제가 征東行省 理問所를 통해 처리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루가치 체제기에 보였던 고려국왕의 사법적 권한 혹은 위상의 변화양상은 그 맥락을 같이 하면서도 다시 변화하게 된다. 이와 같은 몽골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한 국왕의 사법적 권한과 위상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몽골 내 사법처리 방식과 구체적 사례에 대한 보다 광범한 검토를 통해 고려에서의 사례들이 그러한 방식에 비추어 갖는 특징적 면모나 유사성 등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검토는 이후의 연구과제로 삼도록 하겠다.

## 참고문헌

### 1. 1차 사료

『高麗史』 『高麗史節要』 『元史』 『元典章』

### 2. 연구 논저

- 김보광, 2015, 「고려-몽골 관계의 전개와 다루가치의 置廢過程」, 『역사와 담론』 76.
- 안병우, 2008 「高麗王府 斷事官과 高麗-元 관계」 『역대 중국의 판도 형성과 변강』, 한신대학교출판부.
- 안병우, 2009 「원 단사관(斷事官)과 고려의 사법권」 『문화로 보는 한국사』5-세계 속의 한국사-, 태학사.
- 이강한, 2008 「정치도감(整治都監) 운영의 제양상에 대한 재검토」 『역사와 현실』 67.
- 이은정, 1992, 「元朝成立期 자르구치(斷事官)의 役割變化와 그 性格」,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익주, 1996 「高麗·元 관계의 構造와 高麗後期 政治體制」,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장동익, 1994 『高麗後期外交史研究』, 일조각.
- 趙阮, 2012, 「元 前期 達魯花赤의 제도화와 그 위상의 변화」, 『동아시아문화연구』 51.
- 趙阮, 2013, 「大元제국 다루가치체제와 지방통치—다루가치의 掌印權과 職任을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 125.
- 주채혁, 1974, 「高麗内地의 達魯花赤 設置에 관한 小考」, 『清大史林』1.
- 채웅석, 2009, 『고려사 형법지 역주』, 신서원.

사학연구 제121호(2016. 3)

- 森平雅彦, 2008 「事元期 高麗における在來王朝體制の保全問題」 『北東アジア研究』, 別冊1.(2013 『モンゴル覇權下の高麗: 帝國秩序と王國の對応』, 名古屋大學出版會에 재수록)
- 森田憲司, 1996 「約會の現場」 『前近代中國の刑罰』(梅原郁 編,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 岩村忍, 1968 「判例法の實體」 『モンゴル社會經濟史の研究』, 京都大學校人文科學研究所
- 愛宕松男, 1988, 「元代都市制度とその起源」, 『愛宕松男東洋史論集』 v.4-元朝史, 三一書房
- 有高巖, 1936, 「元代の司法制度-特に約會制について」 『史潮』 6-1.
- 有高巖, 1940, 「元代の訴訟裁判制度の研究」 『蒙古學報』1.
- 池内宏, 「高麗に駐在した元の達魯花赤について」(1979, 『滿鮮史研究』 中世, 吉川弘文館 寸考)
- 李治安, 1989, 『元代分封制度研究』, 天津古籍出版社.
- 胡興東, 2007, 『元代民事法律制度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呂志興, 2011, 「元代“約會”審判制度與多民族國家的治理」 『西南政法大學學報』 2011年 4期.
- 劉長江, 2005, 「元代法政体制述論」 『重慶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5年 3期.
- 劉曉, 1996, 「元代大宗正府考述」 『內蒙古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96年 2期.
- 劉曉, 1998, 「元朝斷事官考」 『中國社會科學院研究生院學報』 1998年 4期.
- 趙文坦・孫成狀, 1995, 「元代司法制度的特点」 『東岳論叢』 1995年 3期.

Endicott-West, E. "Imperial Governance in Yuan Times",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 46, No. 2 (Dec. 1986), Harvard-Yenching Institute.

## Abstract

### The Status of Goryeo Kings in the Mongol Subjugation period through the jurisdiction matters

- With a focus on the 'Japmun(雜問)' during the stay of the  
Darughachi and the officer of royal forces -

Myungmi, Lee

After the restoration of King Wonjong in 1269, Darughachis got to stay in Goryeo, and the Mongolian forces also stationed in Goryeo to suppress the Revolt of Sambyeolcho, and to persuade and prepare for an expedition to Japan. Since then, there were cases in which Darughachis and officers of royal forces exercised judicial power mainly in relation to the military. The officers of royal forces exercised judicial power on their own when the military command system was clear, and Darughachis would exercise judicial power over daily matters. What is worth noting in the handling process of judicial matters during the period was “Japmun(雜問)”, in which Darughachis, officers of royal forces, and Goryeo kings or officials dealt with judicial issues together.

Both Darughachis and officers of royal forces were part of the Mongolian force and followed the orders from the emperor including suppressing the Revolt of Sambyeolcho and persuading and conquering Japan.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however,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them: while the officers of royal forces focused on the “military” in their activities, Darughachis made responses to specific matters even covering the

stabilization of common people in Goryeo. Since the Revolt of Sambyeolcho was an uprising against the king of Goryeo, as well, the forces of Goryeo were also active with suppressing it. Darughachis and officers of royal forces were, however, in different positions regarding the persuasion of and expedition to Japan. When there were issues requiring judicial settlement in the process of carrying out common military duties in that situation, they seem to have coordinated and reflected their mutual interests through the system of “Japmun.” When they failed to coordinate their mutual interests in the Japmun process, the individuals that took personal part in it had to go and see the emperor in the royal court and adjust differences in their positions. The King Chungryeol’s personal attending the emperor in 1278 can be understood in that context, which was requested to control further trouble after the conflicts between the two parties, which held an important status within the Mongolian national system and were supposed to play critical roles in the expedition to Japan more directly, grew external through the false accusation of Kim Bang-gyeong.

The situation that Goryeo kings had to attend the Mongolian royal court to personally report the results of joint interrogation with the Mongolian officials in matters related to the Mongol empire and further to defend their treatment of internal affairs of Goryeo when someone raised an issue with it at the emperor’s court shows the changed status of Goryeo kings. In that process, the imperial power of Mongolia functioned as an arbitrator and final decision-maker to settle such disputes.

Keywords: Darughachi, an officer of royal forces, Japmun(雜問), imperial power of Mongolia, Goryeo king’s attending the emperor’s court(親朝), Goryeo-Mongol relations